

## 한국 TÜV SÜD 그룹 회사들을 위한 제3자의 인도 및 용역(Deliveries and Services) 구매 일반거래조건

TÜV SÜD KOREA 2013. 9. 개정, KR

### 1. 계약의 체결, 취소, 서면 양식, 비밀 유지, 하도급 금지, 주문 목적물의 변경

- 1.1 계약체결 회사(이하 "계약자")와 한국 내 TÜV SÜD 그룹의 회사들, 즉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LI63 빌딩 12층에 본점(registered office)을 두고 있는 TÜV SÜD Korea Ltd.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빌딩 13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TÜV SÜD Kocen Ltd.(이하 총칭하여 "고객", 그리고 계약자와 고객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 간의 다음의 계약(이하 "본 계약")과 당사자들 간의 법적 관계는 전적으로 한국 TÜV SÜD 그룹 회사들을 위한 제3자의 인도 및 용역(Deliveries and Services) 구매 일반거래조건("GTC")과 기타 서면 계약에 의한다. 계약자의 표준 거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이 명백한 이의 없이 인도 및/또는 용역을 승인한 것이 고객이 계약자의 인도 조건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TC에 따른 인도는 상품의 인도와 작업 및 용역에 대한 계약을 모두 의미한다.
- 1.2 고객이 철회할 때까지, GTC는 계약자와의 모든 장래의 계약 관계에 적용된다. 합의한 변경은 서면으로 승인된 주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1.3 서면으로 발급되고 승인된 주문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것은 구두 합의 또는 본 계약에 대한 후속 변경에도 적용된다.
- 1.4 계약자가 수령일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주문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 1.5 계약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사업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모든 공개되지 않은 상업적 또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영업비밀(commercial secrets)로 취급하는데 동의한다.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참조로서 언급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하도급 계약자도 동일한 의무에 따라야 한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서류를 분실한 사실을 계약자가 발견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오직 교부된 서류에 포함된 생산 지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에 그 범위에서만 종료된다.
- 1.6 계약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 1.7 고객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문 목적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본 계약의 조항은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 2. 가격, 선적, 포장

- 2.1 합의된 가격은 고정된 가격이고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요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가격은 포장을 포함하여 구매 주문에 기재된 도착지의 DDP(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 인코텀즈 2010년 제7차 개정본 기준)로 이해된다. 가격이 주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문 당시 유효한 계약자의 표시가격이 기본 공제와 함께 적용된다.
- 2.2 출장, 견본/표본 또는 제안 준비,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는 지불을 하지 않는다.
- 2.3 고객은 선적 후에 지체 없이 종류, 양 및 무게에 관한 정확한 세부항목을 표시한 출하 통지를 이용하여 모든 인도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출하 통지, 운임 청구서, 송장 및 모든 서신에는 고객의 주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2.4 위험한 물건의 운송을 규제하는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상품은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 2.5 예정일 이전의 인도, 초과 인도, 총량에 미달하는 인도 또는 일부 인도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된 일부 인도의 경우에는 잔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 2.6 선적은 고객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동안 계약자의 전적인 위험부담 하에 이루어진다.
- 2.7 포장재를 반품할 계약자의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과도한 포장재는 피해야 한다. 오직 친환경 포장 재료만이 사용될 수 있다. 포장재의 송장이 따로 작성되는 경우, 고객은 이상이 없는 상태인 포장재를 계약자에게 무료로 반환할 권리를 갖는다. 포장재가 반환된 경우 계약자는 고객에게 송장에 표시된 포장비용의 3분의 2를 상환하여야 한다.

### 3. 서류, 안전 장치, 산업재산권

- 3.1 저장, 조립 및 조작 설명서와 기타 필요한 안전 장치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도 품목의 유지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도 적용된다.
- 3.2 계약자는 모든 필수적인 자료와 함께 고객이 요청하는 원본 증빙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무료로 지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3 고객이 주문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하였거나 고객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이행 기록, 상세 도면, 치구 및 고정구, 공구, 모형 등은 고객의 지적재산권이 유지된다. 계약자는 단지 계약상 합의된 목적으로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고객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 주문이 수행된 이후에 위에 언급한 품목들은 예외 없이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3.4 계약자는 모든 인도품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고 특허 인도와 인도 품목의 사용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및 저작권 또는 기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3.5 계약자는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야기된 제3자의 모든 청구로부터 고객 및 고객과 거래한 제3자를 면책하고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6 고객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합법적인 소유자로부터 당해 인도 물품의 사용 승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7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의 상호,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자는 이를 개별적으로 또는 계약자 자신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승인한 경우 계약자는 상호, 상표 또는 로고의 크기, 위치 및 레이아웃에 관한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4. 일자, 계약상 위약금, 철회, 대행

4.1 합의된 인도 일자와 기간은 구속력이 있다. 운송의 수령 또는 고객이 지시한 인도 지점에 결합 없는 작업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적기의 성공적인 인수는 그러한 일자와 기간의 준수에 의해 결정된다.

4.2 계약상의 위약금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일자 또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계약상의 위약금은 각 지체 일수마다 주문의 순 가치의 0.2%이지만, 주문의 순 가치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계약상의 위약금에 대한 수 개의 청구는 합산된다. 고객은 추가적인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는 한편, 계약상의 위약금은 그러한 지체로 인해 야기된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인수 시에 고객이 계약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하지 않았던 경우, 최종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상의 위약금은 청구될 수 있다.

4.3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 고객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 달리 규제된다. 지체된 인도 또는 지체된 작업과 용역의 인수는 보상 청구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이행 또는 해결을 위한 추가 기간을 지정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고객은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고객은 본 계약을 철회하는 대신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 의하여 주문이 이행되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4.4 계약자는 인도의 인식 가능한 지체에 대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에게 지체 없이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계약자는 서류에 관한 서면 독촉장을 보내고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필수 서류의 부족을 주장할 수 있다.

4.5 고객은 불가항력 또는 노동 쟁의로 야기된 지체에 대해서도,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이행이 고객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보증, 보장, 하자에 대한 책임에 따른 청구, 손해, 하자 통지 기간, 보증 기간, 중단, 재개

5.1 계약자는 모든 인도가 합의된 명세서, 특히 최근 승인된 기술 표준, 정부당국, 무역기구 및 전문가 협회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포함한 모든 적용가능한 국내 및 국제적 법률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장한다. 계약자가 고객이 희망하는 이행 방식에 관하여 불안을 느끼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5.2 계약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인도 및 제3자의 인도 또는 부수적인 용역에 있어서 친환경적 제품 및 절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는 인도한 상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5.3 고객은 운송, 용역, 작업의 모든 명백한 하자를 서면으로 통상적인 영업 조건에 따라 발견한 즉시 지체 없이, 고객의 수령, 인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숨겨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 기간은 하자 발견 이후 3 영업일 이내로 한다.

5.4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는 지체 없이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무료로 보증 기간 동안 고객불만의 대상이 된 운송, 용역 또는 작업의 하자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하자는 보장된 자료의 미제공 및 보증된 품질의 결여를 포함한다. 고객은 해결방안으로 수리, 결함 이 있는 부품의 교체 또는 대체 인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하자의 발견 및 그 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특히 검사 비용, 해체 및 조립 비용, 운임, 운송 비용 그리고 인적 및 물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인도 품목이 이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교대근무 방식으로 또는 초과근무 시간 동안 또는 공휴일에 수리 또는 신규 인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고객의 중요한 영업상의 이유로 필요하고, 이를 계약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수리 또는 대체 인도를 위하여 고객이 설정한 두 차례에 걸친 합리적인 기한의 만료 후에, 고객은 철회 또는 가격 인하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대체 인도를 위해 합의된 기간은 고객이 설정한 기한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

불이행 또는 하자 있는 이행이 용역의 특정 부분에 한정된 경우, 철회는 해당 특정 부분에 한정될 수 있고,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5.5 중요한 하자의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른 대체 인도를 위하여 고객이 설정한 기한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은 직접 이행하고 선불금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가 고객이 설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하자에 관하여 책임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고객은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다. 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 고객은 수리를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행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자의 하자에 대한 책임 의무의 감소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사소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 고객은 그 이후에 계약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손실이 임박한 경우에 적용된다.

5.6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법률상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간은 고객에게 또는 고객이 정한 수령 또는 사용을 위한 장소에서 고객이 지정한 제3자에게 인도 품목의 인도 시에 개시된다. 설치에 관하여, 기계 및 설비에 적용되는 보증 기간은 고객이 서면 승인서에 언급한 검사 승인 일자에 개시된다. 승인이 계약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보증 기간은 검사 승인에 관한 당해 인도 품목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다.

5.7 하자에 대한 검사 및/또는 해결 기간 동안 고객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는 인도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통상의 보증 기간은 사용 중단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수리 또는 대체 인도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보증 기간은 위험의 이전 이후에 개시된다.

## 6. 품질 보증, 제조물 책임

6.1 계약자는 그 유형 및 범위에 따라 그리고 기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품질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고객과 적절한 품질 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2 계약자에 의하여 이행된 공장 검사는 인도가 고객의 기술 명세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모든 검사 및 이행된 시험의 기록을 만들고, 모든 시험, 측정 및 검사 결과를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객은 언제든지 그 서류를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6.3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자는 계약자의 제품으로 영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 품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6.4 계약자의 상품에 의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적 안전 규정, 대한민국 및/또는 외국의 제조물 책임 규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고객은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범위에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손해는 예방적 리콜 조치의 비용 또한 포함한다. 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고객은 계약자에게 리콜 조치의 내용 및 범위를 알려야 하고 계약자에게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5 추가로 계약자는 리콜 위험을 포함한 제조물 책임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사를 위해 보험 증권을 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송장, 대금지급, 인증서, 유보권, 양도 금지, 상계, 계약자의 파산

7.1 송장은 인도/용역 또는 작업 및 용역 이후에 모든 적절한 서류 및 자료와 함께 2부를 고객에게 별도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송장은 수정된 일자에 고객에 의하여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7.2 대금지급은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검사 승인 및 송장의 수령 이후에 계산된 송장 기재 금액의 3%를 할인하여 30일 이내에 일반적인 양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 할인은 고객이 하자 때문에 대금지급을 공제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인 기간은 하자의 완전한 제거 이후에 개시된다. 예정일(Clause 2.5) 이전의 인도는 대금지급을 위하여 합의된 일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3 중요한 시험의 인증서가 합의되는 범위에서 인증서는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고객에게 송장과 함께 송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은 송장의 수령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인증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불을 위한 기간은 합의된 인증서의 수령과 함께 개시된다.

7.4 고객은 불완전 또는 하자 있는 인도 또는 작업 및 용역의 규정의 경우에 대금지급을 유보할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7.5 계약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고객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다. 계약자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고객은 계약자 또는 이전의 효과로 제3자에게 지급할 선택권을 가진다.

7.6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계약자를 제외하고, 고객은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TÜV SÜD 그룹과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 의하여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청구권을 상계할 권리를 갖는다.

7.7 계약자가 지급을 중단하고 그리고/또는 채무초과가 된 경우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계약자의 자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이 본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보장 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상 보장 의무에 관하여 담보로 순 주문 금액의 최소 5%의 금액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 8. 준수사항

8.1 계약자는 <http://www.tuv-sud.com/code-of-ethics>에서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는 TÜV SÜD 윤리 규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본 계약에 의하여 확인한다.

8.2 계약자는 그의 직원들이 모든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 내에서 모든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다. 계약자는 자신 또는 그 직원들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자 또는 그의 직원이 장래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확인한다. 계약자는 형사상 사기 행위, 부정한 배임, 파산법에 의한 형사 범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 범죄, 과도한 이익 또는 뇌물의 공여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진술한다.

8.3 계약자는 모든 필요한 동의 및 권한이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취득되었음을 고객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진술 및 보장한다.

8.4 계약자의 과실에 의한 본 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계약자와의 모든 협상을 종료할 권리를 가지며, 고객과 사이의 모든 계약상 합의를 해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를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고객이 계약자에 의한 본 절의 의무의 위반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자는 모든 청구로부터 고객을 면책하기로 본 계약에 의하여 동의한다. 나아가, 계약자는 그러한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본 계약에 의하여 동의한다.

#### 9. 무역

계약자는 어떠한 인도 또는 이행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한민국 무역 규정, EC-규정 또는 국제 수출 금지 또는 수출 제한 규정에 의하여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0. 분리가능성

본 일반거래조건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은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1. 이행 장소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할 의무에 관한 이행 장소는 고객이 지정한 인도 장소로 하며, 양 당사자들의 모든 기타 의무에 관하여는 고객의 본점으로 한다.

#### 12. 계약 언어

본 계약의 언어는 영어이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추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영문본이 우선한다.

#### 13. 관할

계약자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기업가인 경우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법적 관할은 고객의 본점소재지가 된다. 그러나, 고객은 계약자의 영업 장소의 법원에 소송 또는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 14. 보충 법률

본 계약 및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관계는 법률 규정 및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충돌과 관계 없이 전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공지:

고객은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PIPA")의 법률 조항에 의하여 계약자의 보호되는 개인 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고객이 대금지급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TÜV SÜD 그룹(관련 대한민국 상법의 의미 내에서) 내의 계열 그룹 회사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다.